

I·SEOUL·U

삼청각 관리운영기관 공모

제 안 안 내 서

2016. 10.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7. 위탁운영 조건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삼청각 핀리 운영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확보 후 운영하여야 함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범위
 - 삼청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안전위해시설 등 기능보강·정비 및 노후시설장비 보수 등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행정편의를 위한 시설공사 및 기자재 구입은 수탁기관에서 부담)
 - 수탁기관으로 선정 후 사업개시일까지 소요되는 각종 초기투자비용(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강사섭외비용, 소모품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용역비, 연료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소모품 제잡비 일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전액 부담한다.(수탁기관은 초기 투자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비용의 담보방안을 서울특별시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행정편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 삼청각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운영비 관련 서울특별시의 별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의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 리모델링 공사기간 발생하는 인건비와 미영업으로 인한 손실 등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한다.
- 임대료 부과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율(50/1000)을 적용하여 토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함
- 수익금 정산
 - 삼청각 운영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직원후생복지, 삼청각의 시설 및 운영관리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재투자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수익사업
 -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한식당, 프로그램, 부대시설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시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 심청각에 관한 직접홍보 외에 심청각 권리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지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 승인이 필요한 위탁사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식당의 메뉴, 가격 등 결정 및 변경
 - 운영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기간, 참여 대상자의 결정 및 변경
 - 수요자 부담비용의 결정 및 변경
 - 유희공간 활용 및 개방 운영의 결정 및 변경
 - 수익사업 및 관리·운영 관련 주요사항 등
- 기 타
-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 수탁기관은 기존의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기존 무기계약직 인력 26명 의무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시설 이용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 관리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8. 추진일정(안)

연번	주요내용	시기	비고
1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16.10.7 ~10.24	
2	사업설명회 개최	'16.10.14	문화본부 4층회의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3	사업제안서 접수	'16.10.21~24	
4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16.10.27~28	
5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16.11.1(예정)	
6	위탁협약 체결	'16.11.8(예정)	
7	업무 등 인수인계 및 합동근무 실시	'16.12.~	
8	위탁개시	'17.1.1~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